

의안 검토 보고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0. 29. 대전광역시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 건 요 지 : 따 로 붙 임
4. 검 토 의 견 : 따 로 붙 임

위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2007년 11월 일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예 순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07년 10월 29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0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대전지방경찰청의 개청에 따라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중 “충남지방경찰청장”을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장”으로 조정함(안 제3조제2항제3호).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7. 1. 26일에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 2007. 7. 2일자로 변경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거 대전지방경찰청의 개청으로 대전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중 충남지방경찰청장 대신 대전지방경찰청장을 협의회 위원에 포함시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